

안산시 안산산업역사박물관 건립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2410

제출년월일 : 2013. 10. 23.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제안이유

- 박물관 건립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위하여 자문기구인 건립자문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 위함.

주요내용

- 가. 위원회 설치시한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 나. 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다.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라. 분과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마. 위원회 위원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제정 조례안 : 붙임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
-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조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0조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예산수반사항

- 위원회 수당 : 110,000원(1회 최대) × 15명 × 연4회 = 6,600,000원

사전예고결과 : 의견없음

기타 참고사항 : 없음

안산시 안산산업역사박물관 건립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 안산산업역사박물관건립 준비에 대한 안산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안산시 안산산업역사박물관건립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시한) 안산산업역사박물관건립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안산산업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건립 사업이 완료되는 날까지 한시적으로 구성·운영한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박물관 건립 준비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박물관 건립 타당성에 관한 사항
2. 박물관 건립사업의 기본방향 및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3. 박물관의 전시 계획에 관한 사항
4. 박물관의 건축 계획에 관한 사항
5. 유물의 수집·제작·보존, 연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박물관 건립 준비 전반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담당 국장으로 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박물관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박물관과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임직원
 3. 안산시의회 의원
 4. 박물관 관련 부서 국·소·본부장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박물관 건립 사업이 완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안전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분과위원회의 설치 등)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밖의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해외여행(6개월 이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위원으로서의 품위손상, 알게 된 사실의 외부누설로 박물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때

5. 그 밖의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11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각각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계장이 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		산업정책과
입 안 자	실과장 직위·성명	산업정책과 최 종 은
	담당·팀장 직위·성명	산업정책계장 김 창 섭
	담 당 자 성명·전화	조 수 현 (행정 2850)

안산시 안산산업역사박물관 건립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2450
----------	------

제출연월일 : 2013년 11월 7일
제출자 : 문화복지위원장

1. 수정이유

- 보다 더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구성원수를 늘리고 위원의 임기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원회의 구성을 “15명”에서 “20명”으로 늘리고자 함(안 제4조)
- 위원의 임기를 “사업 완료”에서 “3년”으로 명확히 함(안제5조)

안산시 조례 제 호

안산시 안산산업역사박물관 건립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 안산산업역사박물관 건립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제1항 중 “15명”를 “20명”으로 한다.

안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건립 사업이 완료되면 위원회의 임기는 종료된다.

안 제8조제2항 중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안산시 안산산업역사박물관 건립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수정안 조문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p>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u>15명</u>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생략)</p> <p>③ (생략)</p> <p>1. ~ 5 (생략)</p>	<p>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 ----- <u>20명</u> ----- -----.</p> <p>② (원안과 같음)</p> <p>③ (원안과 같음)</p> <p>1. ~ 5 (원안과 같음)</p>
<p>제5조(위원의 임기) <u>위원의 임기는 위촉일</u> <u>부터 박물관 건립 사업이 완료되는 날</u> <u>까지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해</u> <u>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까지로 한다.</u></p>	<p>제5조(위원의 임기) <u>위원의 임기는 3년으</u> <u>로 하며, 1회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u> <u>다만, 건립사업이 완료되면 위원의 임</u> <u>기는 종료된다.</u></p>
<p>제8조(분과위원회의 설치 등) ① (생략)</p> <p>② <u>분과위원회의 구성과 그 밖에 필요</u> <u>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u> <u>장이 정한다.</u></p>	<p>제8조(분과위원회의 설치 등) ① (원안과 같음)</p> <p>② ----- <u>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u> <u>한 사항은 -----</u> -----.</p>